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9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공공하수처리시설(고성, 회화, 거류)  
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19. 10. 7.

# 공공하수처리시설(고성, 회화, 거류)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0. 7.  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공공하수처리시설(고성, 회화, 거류)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 계약기간이 2019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위탁 사업자 선정 필요
- 가.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안정적이고,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위탁근거

- 가.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3항
- 나.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## 3. 위탁내용

- 가. 시설현황
  - 설치현황: 측정기(COD, TN, TP, pH, SS) 및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별 1식
  - 설치목적: 환경부에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·전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감시하고 행정자료로 활용
  - 위 치: 고성읍 동해로 121, 고성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(회화, 거류)
- 나. 위탁개요
  - 위탁운영기간: 2020. 01. 01. ~ 2020. 12. 31.(1년간)
  - 위탁운영비: 금175,840천 원
  - 선정방법: 공개경쟁 입찰
  - 위탁내용: 측정기기 및 주변기기 점검, 정도관리(월 2회~4회 주기적으로 기기유지관리 및 약품교체, 점검실시) 전반

#### 4. 위탁사유

-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로써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유지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
- 점검기관(낙동강유역환경청)에서 점검시 측정기기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행정처분(과태료 등)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

#### 5. 기대효과

-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측정기기의 신뢰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
-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등으로 완벽한 수질관리

#### 6. 향후 추진계획

- 2019. 11. : 계약심사 의뢰
- 2019. 12. : 공개경쟁입찰 및 계약업체 선정
- 2020. 01. 01.: 민간위탁 실시

#### 7. 참고사항

- 가. 위탁 운영비 내역: 별첨 1
- 나. 관계 법령: 별첨 2

(별첨 1)

##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원가계산서

구분	산출기준	금액(원)	비 고
재료비	직접재료비	90,243,000	①
	간접재료비		
	소계	90,243,000	
노무비	직접노무비	50,676,472	②
	간접노무비		
	소계	50,676,472	
경비	산재보험료	2,052,397	
	고용보험료	440,885	
	건강보험료	861,500	
	노인장기요양보험료	63,579	
	연금보험료	1,261,844	
	기타경비	2,027,059	
	소계	6,707,264	③
일반관리비		5,905,069	④=(①+②+③)X4.0%
이윤		6,328,881	⑤=(①+③+④)X10%
총원가		159,860,686	⑥=①+②+③+④+⑤
부가가치세		15,986,069	⑦=⑥ X 10%
도급예정액		175,840,000	⑧=⑥+⑦

※산출근거: 2019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

(별첨 2)

## 관계 법령

### □ 물환경보전법

제38조의2(측정기기의 부착 등) ③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(이하“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”이라 한다)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“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”라 한다)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## 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③ 군수는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,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같다.